인권침해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침해]

『인권침해』 콘텐츠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개념 및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의 종류를 안내합니다. 또한 직장, 학교, 군, 체육계, 장애인, 노인, 외국인, 형사절차, 집회 · 시위 및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야별 인권침해 유형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조정, 헌법소원, 국가배상 · 형사보상 · 민사상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 방법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권침해 1
1. 인권침해의 이해 4
1.1. 인권침해 알아보기 4
1.1.1. “인권침해”란? 4
1.1.2. 헌법 속 인권 6
2. 분야별 인권침해 유형 11
2.1.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인권침해 11
2.1.1. 직장 내 인권침해 11
2.1.2. 학교 인권침해 14
2.1.3. 군 인권침해 19
2.1.4. 체육계 인권침해 22
2.2.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25
2.2.1. 장애인 인권침해 25
2.2.2. 노인 인권침해 31
2.2.3. 외국인 인권침해 33
2.3. 공권력 및 디지털 환경 속 인권침해 37
2.3.1.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37
2.3.2.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인권침해 39
2.3.3. 디지털 인권침해 42
3. 인권침해 구제 46
3.1.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 46
3.1.1. 진정 46
3.1.2. 조정 49
3.1.3. 군인권침해 구제 51
3.2. 헌법재판소를 통한 구제 53
3.2.1. 헌법소원심판 53
3.3. 배상 및 보상을 통한 피해구제 57
3.3.1. 국가배상 청구 57
3.3.2. 형사보상 청구 59
3.3.3. 민사상 손해배상 63

1. 인권침해의 이해

1.1. 인권침해 알아보기

1.1.1. “인권침해”란?

인권 및 기본원칙

“인권”이란?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헌법상 기본적 인권 보장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전단).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조 후단).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인권 보장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1항).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하는 “인권침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보장된 인권(「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 제외)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제1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참조).

차별행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하는 “차별행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및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평등권 침해로서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참조).

> ※ “평등권 침해로서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함),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및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본문).
>
> 1.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및 해고 등을 포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2.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4. 성희롱[업무, 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행위

※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단서).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 콘텐츠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도 인권침해에 포함하여 설명합니다.

인권의 제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Q.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집회는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공익을 위한 규제라도 예외 없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의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보았지만,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도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되어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바168 등 결정 참조).

비례의 원칙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 참조).

▸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 방법의 적절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함
- 피해의 최소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해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해야 함
- 법익의 균형성: 그 입법에 따라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함

> **Q.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나요?**
>
> A.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범죄로 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도 무제한일 수는 없습니다**. 형벌은 헌법 제10조의 요구와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원칙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해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4헌바422 결정 참조).

1.1.2. 헌법 속 인권

자유권 보장

신체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전단).
-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으로,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서 모든 국민의 신체자유보장을 선언하고 그 보장원리로서 적법절차·죄형법정주의·고문금지·사전영장의 원칙·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로서,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함께 보장됩니다(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등 결정).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입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통신의 자유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8조).

▪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결정).

▪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참조).

- 우편물의 검열
- 전기통신의 감청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등 결정).

>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및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
> 3. 1. 또는 2.를 가명처리(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함)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며,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합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등 결정).

평등권 보장

차별금지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으며,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4헌바53 결정).

평등권 보장의 기준

▪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은 국가권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216 결정).

> **Q. 모든 차등대우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 A. 아닙니다.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다**(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결정).
>
> 반면 차등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평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면서도,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5. 25. 선고 2019헌마1234 결정 참조).

표현·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

▪ 언론·출판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입니다(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결정).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기본권이며,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해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역시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호됩니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결정 참조).

▪ 결사의 자유는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는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에의 가입, 잔류의 자유를, 소극적으로는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합니다(헌법재판소 2019. 12. 31.자 2019헌마1299 결정).

> **Q.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나요?**
>
> A. 허위사실의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익을 해친다면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이라 하여 언제나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표현이 어떤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의 표현'**도 「대한민국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 2009헌바88 병합 결정).

한편 헌법재판소는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적 가치인 인격 실현과 사회적 가치인 자치정체(自治政體) 이념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6헌바84 결정).

양심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19조).

▪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합니다(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5 결정).

※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입니다(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5 결정).

※ 양심의 자유의 보장 범위와 한계

-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우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합니다. 즉, '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결정).
- 이때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므로,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습니다. 특히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도덕률과 일치하는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결정).
- 다만, 양심의 자유가 헌법상 의무나 법질서로부터 언제나 면제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형평이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에 반하지 않는 방식의 대체적 의무나 일정한 복무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마1146 결정).

종교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1항).

▪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로 구성됩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46 결정).

- 신앙의 자유: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음)

-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상의 의식·예배 등 종교적 행위를 각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등 종교적인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됨

-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적 목적으로 같은 신자들이 집회하거나 종교단체를 결성할 자유

※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는 아니지만,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Q.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을 목적으로 한 집회제한 등 조치는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통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집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규율 대상은 '여러 사람의 집합'이고, 예배의 내용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집회제한 등 조치는 비례원칙에 부합해야 하고 행정소송 등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바178 결정).

2. 분야별 인권침해 유형

2.1.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인권침해

2.1.1. 직장 내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2023. 4.) 3-4면 참조].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① 지위의 우위: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직급상 상위

② 관계의 우위: 인원수 우위, 연령·출신학교,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

③ 우위성 이용: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2.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행위가 폭행·폭언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권한을 남용한 사적 지시 및 감시)** 지자체 시립창극단의 예술감독인 피진정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단원들에게 동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보고하게 하고,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사적인 동행 및 식사 대접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 **(부당한 업무 배제 및 모욕)**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견해 차이가 있는 단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공연 및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고, 동료 단원들 앞에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 **(고용상 불이익 및 인격권 침해)** 단원들에게 사비로 외부 강사를 접대하도록 강요하고, 기량이 검증된 단원들에게 보복성으로 낮은 근무 평점을 부과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 단원들의 인격권과 근로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3. 12. 1. 의결, 23진정0103300·23진정0707800(병합)>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하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을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2조).

▪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 2026, 3면 참조).

1.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관련성
2.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3.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1. 파면, 해임, 해고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및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및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 지역방송국 보도제작국장이 수습 프로듀서 앞에서 한 발언이 성적 언동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이후 피해근로자를 본사 교육훈련에 참여시키지 않고, 수습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조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 <출처: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 등이 보장되지 않아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성희롱 사건의 2차 피해 여부를 심의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징계를 의결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한 행위이며, 징계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예상되는 행정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청문 절차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심의 결과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3. 1. 26. 의결, 21진정0763500·21진정0764800(병합)>

-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녹취파일을 본인의 동의 없이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성희롱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공식 기구에 사건을 일임하지 않고 임의로 대응하거나, 조사 중인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2. 7. 8. 의결, 21진정0408000·21진정0533500(병합)>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 금지

고용에서 남녀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차별적 처우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차별적 처우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권 및 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여성 근로자가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남성 근로자의 업무와 동일가치 노동임에도 남성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해당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남녀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근로자에게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불리한 처우가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일부 기간제근로자만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5262 판결>

※ 근로자의 인권보호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다음과 같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2.1.2. 학교 인권침해

학생에 대한 지도 및 징계의 한계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됩니다(「교육기본법」 제12조).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

▪ 학생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 참조).

학생의 징계

▪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학교내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음)

▪ 학교의 장은 위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

학생생활지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구 및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 학업 및 진로
- 보건 및 안전
- 인성 및 대인관계
-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의 행위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에 대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3항 전단).

- 이 경우 해당 학생을 피해 대상과 즉시 분리시키는 등 학생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도구 및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3항 후단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학생 체벌 및 징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학생 지도나 징계 과정에서도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인격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에서 체벌을 했다고 하더라도 체벌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고 절차와 방법이 적정하지 않으며, 체벌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마1189 결정>

- 대법원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원의 학교교육에 관한 재량권을 존중하더라도, 법령상

>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때에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내 봉사'의 징계 내용에 법령상 근거 없이 '사과편지작성'을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출처: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학교폭력 및 대응

"학교폭력"이란?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

▪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8면).

유형	예시상황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및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및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및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및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강취(공갈)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및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및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따돌림	• 집단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및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주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 야한 사진, 야한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및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및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및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및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학교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학교 내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학교 측에도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초등학교 내에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괴롭힘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가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여, 가해학생들의 부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학교폭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학교폭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교원에 대한 예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항).

교원의 신분보장

▪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

▪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2항).

교육활동 침해행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함)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관련 사례

▪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보호자의 의견 제시 방식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하였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 교원의 인권보호 및 교육활동 보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교권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3. 군 인권침해

군인의 기본권

기본권 및 평등대우의 원칙

-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 군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적용하는 경우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1조).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보장

-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4조제1항).

종교생활의 보장

-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제1항).
-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이하 "종교시설등"이라 함)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등 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제2항).
-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않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제3항).

의료권의 보장

-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7조).

사적 제재 및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군기문란 행위 금지

▪ 군인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1.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5.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6.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군 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 사례

▪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례에서 군인 등에 대한 강제추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해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92조의3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군 조직 구성원에 의한 강제추행 범죄로부터 구성원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군 기강의 확립을 통해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 <출처: 헌법재판소 2025. 5. 29. 선고 2022헌바209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군대 내 성적 지향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자료 제출 요구, 동의 없는 검사 등이 인격권·평등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 **(성적 지향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군 복무 중인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대 내에 알려진 사안에서, 성적 지향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이를 다룰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한 것은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 • **(은밀한 사생활 자료 제출 요구)**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동성애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키스사진이나 성행위 사진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심사자료로 보관·검토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 •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진료·검사)** 피해자에게 정신질환의 징후가 없음에도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고, HIV 감염이나 매독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는데도 충분한 설명과 명시적 동의 없이 HIV 검사 및 매독검사를 받게 한 것은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차별행위로서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06. 6. 26. 의결, 06진차87>

병영생활 내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

군인 상호 간 인격·명예·권리 존중

▪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제1항).

▪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며, 병(兵) 상호 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및 지시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병영생활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금지

▪ 병영생활에서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을 포함) 및 집단따돌림, 성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17조제3호).

▪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제1항).

※ 군인은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제2항).

신고자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이하 “불이익조치”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제1항).

▪ 국방부장관은 신고자와 신고등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

군대 내 폭언·폭행 및 가혹행위 등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군대 내 훈계 또는 금연지도 목적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넘으면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이 사병들에게 강제로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거나 약초를 씹어 먹게 하고,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발목에 올려놓거나 이마 사이에 놓게 한 사안에서, 비록 금연을 강조하거나 훈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정당한 범위를 넘은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행위이거나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 <출처: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군대 내 상급자 또는 선임병의 폭언,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이 군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부대 상급자가 훈련 및 보고 과정에서 하급자에게 장병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으며, 문서를 찢고 책상을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사안에서, 이러한 언행이 단순한 업무상 질책의 범위를 넘어 하급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5. 12. 30. 의결, 25진정0693500>

• 전입 신병이 약 1개월 동안 선임병들로부터 폭행, 암기 강요, 욕설, 인격모욕적 발언 등을 지속적으로 당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피해자의 자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4. 4. 10. 의결, 13진정0355800>

※ 병영생활 및 고충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병역의무자(현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4. 체육계 인권침해

체육계 인권침해 금지

"체육계 인권침해"란?

▪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3).

체육계 인권침해의 신고

▪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제1항 참조).

▪ 체육단체의 임직원, 체육지도자, 심판, 선수,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제2항 참조).

체육계 인권침해의 조사

▪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체육계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제1항 및 제4항 전단 참조).

▪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해야 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제5항 및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 이라 함)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제1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체육계 인권침해의 주요 유형별 사례

폭력·언어폭력 및 가혹행위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의 사례에서 지도자의 폭력, 언어폭력 및 가혹행위 등이 선수의 신체의 자유, 인격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지도자의 폭언·삭발 강요 및 가혹행위)** 유소년 D팀 지도자 A씨는 소속 선수들에게 평소 욕설을 하고, 삭발을 강요하거나 물병을 던지는 등 거친 언행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공을 차 선수들의 몸에 멍이 들게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수 숙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삭발, 관중석 청소 및 새벽운동 등을 지시했습니다. 지도자 B씨도 삭발, 휴대전화 압수 등 미성년 선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벌칙을 정해 임의로 적용했고, 감독 C씨는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를 요구했고, 그 결과 지도자 A씨에게 자격정지 3년, 지도자 B씨에게 자격정지 2년, 감독 C씨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2025 스포츠, 신뢰를 되찾다」, 36~37면>

- **(감독의 반복적 폭행·욕설 및 모욕)** B팀 감독 A씨는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수들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운동화로 머리를 가격했으며,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감독 A씨의 행위가 폭력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그 결과 감독 A씨에 대해 제명 및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2025 스포츠, 신뢰를 되찾다」, 42~43면>

괴롭힘·집단따돌림 및 갑질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의 사례에서 선수나 지도자가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선수나 지도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훈련·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동료 선수들의 괴롭힘 및 사생활 통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A씨는 동료 선수인 피해자가 고등학생 선수와의 연습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또한 약 6개월 동안 훈련 중 운동기구로 공을

쳐 피해자의 머리나 얼굴을 맞히고, 청소를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강요했으며,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등 사생활을 통제했습니다. 선수 B씨도 피해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치며 괴롭혔고, 코치 C씨와 감독 D씨는 피해자를 수개월간 훈련에서 배제하거나 퇴사를 종용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 A씨의 행위가 폭력 및 폭언,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고, 선수 B씨의 행위는 폭력에 해당하며, 코치 C씨와 감독 D씨의 행위는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선수 A씨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 선수 B씨에게 자격정지 1년, 코치 C씨에게 출전정지 6개월, 감독 D씨에게 자격정지 10개월의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2025 스포츠, 신뢰를 되찾다」, 32~33면>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근무환경 악화)** B연맹 회장 A씨는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 훈련장 안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던 소속 지도자인 피해자에게 기존 사무실을 비우고 훈련장 내 창고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공간에 대한 운영·관리 권한이 연맹에 있더라도 피해자가 사용할 공간이 비좁고 위생적이지 않았으며, 근무환경을 제대로 조성해 주지 않은 점과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와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회장 A씨의 행위가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를 요구했고, 그 결과 회장 A씨에게 자격정지 10개월의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2025 스포츠, 신뢰를 되찾다」, 30~31면>

성희롱·성폭력 및 불법촬영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의 사례에서 지도자 또는 선수의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및 불법촬영 등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지도자의 성추행·성희롱 및 괴롭힘)** E연맹 지도자 A씨는 소속 선수인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볼을 만졌으며, 단둘이 있는 차 안에서 몸을 가까이 하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약 한 달 동안 부적절한 표현을 지속적으로 보내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해당 체육회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지도자 A씨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A씨를 퇴촌 조치했으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행위가 성추행, 성희롱, 기본권 침해 및 괴롭힘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를 요구했고, 그 결과 지도자 A씨에 대해 제명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2025 스포츠, 신뢰를 되찾다」, 56~57면>

- **(동료 선수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 및 은폐 시도)** 실업팀 선수 A씨는 숙소에서 자고 있던 동료 선수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고, 피해자에게 성적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상황을 목격한 지도자 C씨는 이를 보고받고도 회사에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피해 목격자인 선수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해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 A씨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고, 지도자 C씨의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선수 A씨에 대해 제명, 지도자 C씨에 대해 출전정지 4개월의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2025 스포츠, 신뢰를 되찾다」, 50~51면>

- **(탈의실 불법촬영)** 중학교 B부 남자 선수 A씨는 훈련장 복도에서 여자 선수 탈의실 창문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든 팔을 뻗어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 선수들이 샤워 후 머리를 말리던 중 거울에 비친 창문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A씨를 발견했고, 이후 소속 학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A씨가 탈의실에 있는 여자 선수 14명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 A씨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를 요구했고, 그 결과 선수 A씨에 대해 제명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2025 스포츠, 신뢰를 되찾다」, 52~53면>

합숙문화와 사생활·기본권 침해 사례

▪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의 사례에서 합숙생활이나 훈련관계에서 발생한 사적 지시, 사생활 통제 및 외출·외박 제한 등이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 **(합숙생활 중 사적 지시 및 사생활 통제)** C도청 선수 A씨는 후배 선수인 피해자에게 담배 심부름과 빨래 널기를 강요하고, 공동 생활비를 임의로 지출했으며, 숙소에서 발생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를 치고, 숙소 내 CCTV를 통해 엿보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으며, 약 1년 반 동안 시합 등을 이유로 외출과 외박을 통제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 A씨의 행위가 선수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를 요구했고, 감독 B씨에 대해서는 합숙생활과 훈련관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아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습니다. 그 결과 선수 A씨에게 출전정지 1년의 징계가 이루어졌고, 감독 B씨는 스포츠윤리센터 주관 인권교육을 수강했습니다.
>
> <출처: 스포츠윤리센터, 「2025 스포츠, 신뢰를 되찾다」, 40~41면>

> ※ 체육계 인권침해의 신고 및 상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윤리센터(☎ 1670-2876, https://www.spet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2.2.1. 장애인 인권침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장애인 차별행위

▪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조제1항).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함)에 대해 1.부터 4.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됨)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4.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 "괴롭힘 등"이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1호).

차별금지의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4조부터 제37조까지 참조).

구분	주요 내용
고용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고용 전 과정의 차별금지, 채용 전 의학적 검사 금지, 장애 관련 개인정보 누설 금지 등
교육	입학 거부 금지, 전학 강요·거절 금지, 교육활동 참여 제한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등
재화·용역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편익 제공 금지, 이용 기회 박탈 금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 편의 제공 거부 금지 등
토지·건물	매매·임대·입주·사용 시 부당한 차별금지
금융상품·서비스	금융상품·금융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금지
시설물	시설물 접근·이용·대피 시 차별금지, 보조견·장애인보조기구 반입 및 사용 거부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등
이동 및 교통수단	이동·교통수단 접근·이용 시 차별금지, 보조견 동반·장애인보조기구 반입 거부 금지, 불리한 요금 적용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등
정보접근	전자정보·비전자정보 이용 및 접근 차별금지, 의사소통 지원자 활동 방해 및 부당처우 금지 등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활동 참여 제한·배제·거부 금지, 의사에 반한 행동 강요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등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절차·서비스 이용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및 불이익 금지, 형사사법절차 조력 거부 금지 등
참정권	선거권·피선거권·청원권 등 포함한 참정권 행사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동등한 정보 제공 등
모·부성권	임신·출산·양육 등 모·부성권 차별금지, 입양 자격 제한 금지, 자녀에 대한 구분·불이익 금지 등
성	성적자기결정권 존중, 성생활 향유 기회 제한·박탈 금지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과중한 역할 강요 금지, 의사결정 배제 및 의사에 반한 외모·신체 공개 금지, 권리 행사 제한·박탈 금지, 외부 소통권 제한 금지 등
건강권	의료행위 시 제한·배제·분리·거부 금지, 장애인의 성별·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의료정보 제공 등
괴롭힘 등	피해 장애인 구조, 신고자 불이익 처우 금지, 집단따돌림·모욕·비하 표현 금지, 유기·학대·금전적 착취 금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추행 및 강간 등 금지 등
장애여성	임신·출산·양육·가사 역할 강제 또는 박탈 금지, 고용·교육상 불리한 대우 금지 등
장애아동	교육·훈련·건강보호·재활서비스 등 기회 박탈 금지, 의무교육 배제 금지, 부당한 대우 및 강제 시설 수용·무리한 재활치료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등
정신적 장애	정서·인지적 장애 특성의 부당한 이용 및 불이익 금지 등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무기계약직 전환심사)** 장애인 계약직 직원들이 2년간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에서 모두 탈락한 사안에서, 피진정 대학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업무 특성이나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문서작성테스트를 실시한 것은 고용 영역에서의 장애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 3. 13. 의결, 17진정0795500>

-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 지적장애인이 인감 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인감증명서의 구체적 사용 목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용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발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지적장애인에게 과도한 의사능력 확인을 요구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4. 2. 14. 의결, 23진정0568900>

-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거부)** 지적장애인이 아파트 잔금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은행이 의사능력 유무를 사안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후견인증명서 또는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요구하며 대출을 거부한 사안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으로 설명하거나 대면 면담을 통해 의사능력을 확인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4. 7. 31. 의결, 24진정0175900>

• **(청각장애인에 대한 놀이시설 이용 제한)** 청각장애인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루지 체험시설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시설 측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제한한 사안에서,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탑승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루지 이용에 필수적인 안전교육 및 조작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도 제공하고, 현장 안내와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의 탑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의결, 22진정0546500·22진정0554500(병합)>

•**(발달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의 보조석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한 사안에서, 발달장애인이라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발달장애인 전체를 일반화하여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부정적 편견에 기초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이동권을 제한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2. 2. 24. 의결, 21진재0001900>

• **(프로야구 예매·관람 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 미제공)** 지체장애인이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했으나,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온라인 예매만 허용되고 현장 예매가 제한되어 경기를 관람하지 못한 사안에서, 장애인 등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사람이 현장에서 장애인 증빙 확인을 거쳐 발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대체텍스트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결제 가능 시간이 제한되어 예매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한 것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1. 11. 3. 의결, 20진정0712500>

• **(시각장애인에 대한 선거정보 접근 편의 미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 게시된 후보자 공약 PDF 파일이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로 읽을 수 없는 형태였고,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파일이나 저장매체 라벨 역시 시각장애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제공된 사안에서, 시각장애인이 선거 관련 정보에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3. 8. 8. 의결, 22진정0381300>

•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조력 미보장)** 지적장애인이 구치소에서 여러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일부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와 수사 담당 경찰관 대상 사례 전파 및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5. 1. 22. 의결, 24진정0335600>

•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청각장애인이 다이어트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 병원 측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상담 및 진료를 거부한 사안에서, 의료기관이 진정인의 청각장애 정도, 장애의 원인, 현재 건강상태 및 약물 부작용 경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2. 11. 9. 의결, 22진정0640800>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괴롭힘)** 장애인 근로자가 제품 불량을 냈다는 이유로 작업반장이 피해자의 귀 가까이에 미니메가폰을 대고 질책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음에도 따라가며 계속 질책한 사안에서, 해당 행위가 합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작업지시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질책행위로서 신체적·정서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 7. 27. 의결, 19진정0514200>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전학 강요, 체험활동 배제, 특수교육 지원 여건 부족 등이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평등한 교육 기회 보장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장애학생에 대한 전학 강요 및 퇴학처분)** 자폐성·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이 일반학교에 진학한 후, 학교 측이 졸업장은 줄 테니 일부 수업만 듣고 귀가하라고 하거나 특수학교로 전학할 것을 권유하고, 이후 수업 중 행동을 이유로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에게 특수교육 과정이나 특수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특수학교로 전학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환경에서도 필요한 특수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와 교육지원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퇴학을 의결한 것은 피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장애인의 전학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5. 9. 18. 의결, 15진정0280500>

- **(직업체험관에서의 장애아동 체험활동 배제)**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이 직업체험관의 뷰티숍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강사가 보호자에게 네일 플리쉬를 섭취하지 못하게 하라고 주의시키고, 비장애아동의 수업에 지장을 줄 경우 체험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뒤, 수업 중 아동이 물건을 만지는 등 산만한 행동을 하자 교실 밖으로 나가도록 한 사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아동에게 주의를 주거나 보호자에게 제지를 요청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바로 수업 참여를 제한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교육·레크리에이션 제공 기회를 제한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 2. 19. 의결, 19진정0157800>

- **(특수학교 배치 불허와 특수학급 확충 필요성)**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이 특수학교 입학을 희망했으나, 특수학교 수용 여건 등을 이유로 1지망 특수학교가 아닌 2지망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사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배치가 장애유형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진정은 기각했습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수용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 교육감에게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 지원과 도내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확충 예산 확보를 권고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5. 2. 25. 의결, 24진정0830400>

장애인학대 금지

"장애인학대"란?

▪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장애인 대상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장애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제1항).

- 파면, 해임, 해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및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제2항).

> ※ 장애인학대 등과 관련된 상담·신고 및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https://www.naap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폭언, 노동착취 및 과도한 격리 등이 장애인 학대에 따른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신병원에서의 과도한 격리 및 편의제공 미흡)** 정신병원에 입원한 장애인이 낙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9일간 격리실에 격리되고, 평소 사용하던 목발 사용을 제한당한 사안에서, 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문을 잠그고 격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병원이 목발 사용을 제한하면서도 충분한 대체 보조기구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장애인이 자비로 휠체어를 구입하게 된 점은,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소홀히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 2. 19. 의결, 18진정0863200>

-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등)** 정신요양시설이 정신장애인들에게 세탁 및 식당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이를 작업치료 또는 직업재활로 운영한 사안에서, 해당 작업이 치료·재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프로그램 아래 시행된 것이 아니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세탁·식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측면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작업치료기록지가 작성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휴일 없이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는 치료 또는 재활 목적의 작업치료로 보기 어렵고 정신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2. 11. 30. 의결, 22진정0497400>

- **(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폭언 및 보호조치 미흡)**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에게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하고, 지각 또는 수업 태도 등을 이유로 체벌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안에서, 해당 행위가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및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장이 장애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충분한 조사나 신고,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학대가 지속된 점에 대해,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예방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수교사에 대한 징계와 학교장에 대한 주의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3. 9. 24. 의결, 13진정0177400>

※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다음과 같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취업·창업』
- 『장애인 편의·건강지원』
- 『장애인 교육』

2.2.2. 노인 인권침해

노인인권

"노인인권"이란?

▪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노인인권 실천안내서」, 2023, 30면).

※ 노인인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정의는 없으나, 좁은 의미로는 노인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에서부터 넓은 의미로는 연령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권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노인인권 실천안내서」, 30면).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받는 노인인권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1항·제4항 참조).

노인학대

"노인학대"란?

▪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 대상 금지행위

▪ 누구든지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폭언, 협박 및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노인요양시설 내 인권침해 유형

- 존엄성에 대한 권리: 노인을 이름이 아닌 신체적 특징이나 별명으로 부르는 행위
-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고나 질병 악화가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거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 고문과 굴욕적이거나 비인간적인 대우의 금지: 식사, 위생 및 배변 등 일상생활 환경과 돌봄서비스를 노인의 의사와 상태에 맞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신체의 자유, 이동과 구속되지 않을 자유: 낙상 예방 등을 이유로 이동·외출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보호대 등으로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
- 선택, 자율성, 법적 능력 및 법 앞의 평등에 대한 권리: 치료, 프로그램 및 생활일정 등을 시설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가족 면회, 전화 및 서신 등 가족과의 교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돌봄 편의를 이유로 기저귀 착용을 요구하는 행위
- 표현·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특정 종교활동이나 신념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특정 종교활동만 우대하는 행위
- 평등과 차별금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인지능력 등을 이유로 입소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효과적 구제책에 대한 권리: 시설 내 사고나 인권침해에 대해 의견 제기, 고충처리 및 구제절차 이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노인 인권 실천 안내서」, 37~89면 참조>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보장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노인인권 침해 및 노인학대 사례

노인의 자기결정권 및 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노인 환자의 진단명 미고지, 금전착취 및, 강제노동 등이 노인의 알 권리·자기결정권, 존엄성, 신체의 자유 또는 사생활의 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의사의 진단명 미고지로 인한 노인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고령의 노인 환자가 위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담당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진단 사실과 수술 가능 여부 등을 알리지 않고 보호자들과만 상의하여 수술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사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가 초기 치매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질병과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위암 진단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노인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 12. 23. 의결, 20진정0400700>

•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금전착취 및 강제노동)**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입소 노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입·출금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금전을 임의로 사용하고, 일부 입소자에게 시설 내 밭일을 시키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해 지급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가 없이 밭일을 시키고, 정신장애가 있는 입소자에게 의자를 들고 서 있게 하는 벌을 준 행위는 노인학대 및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4. 6. 24. 의결, 14진정0061100>

※ 노인학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노인학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3. 외국인 인권침해

외국인 차별금지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제4조 참조).

재한외국인 및 영주권자의 처우 보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권자(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및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3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참조).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례에서 외국인의 평등권,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를 각각 법적 지위가 다름에도 일정한 보호와 처우의 대상으로 함께 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난민인정자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마1079 결정>

-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가지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므로, 외국인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업연수생이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 병원의 진료 거부)** 외국인 환자가 병원 진료를 예약하였으나, 병원 직원이 “담당의사가 외국인 진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예약 변경을 요청한 사안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직원의 발언이 환자에게 전달되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인식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국적 또는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6. 5. 25. 의결, 15진정0916900>

-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제 이용 차별)** 외국국적 동포가 이동전화 요금제에 가입했으나, 통신사가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개통 가능한 추가회선 수를 적게 제한하여 요금제 혜택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체류기간, 주거 안정성 및 신용도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추가회선 수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대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9. 12. 26. 의결, 19진정0474900>

- **(영문 이름이 긴 외국인에 대한 통장 개설 거부)** 외국인이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을 신청하였으나, 은행이 영문 이름이 길어 전산상 입력이 어렵다는 이유로 통장 개설을 거부한 사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영문 이름이 긴 외국인에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은행 사례 등에 비추어 전산상 글자 수 제한을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금융서비스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2. 6. 14. 의결, 21진정0559200>

• **(외국인 주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외국인 주민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일상 제약과 피해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외국인도 지역 주민으로서 행정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2. 10. 18. 의결, 21진정0521100>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외국인 인권보호

강제퇴거 대상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참조).

▪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보호시설 피보호자의 인권 존중 등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에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

※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해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1호).

▪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함)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제1항).

강제력 행사의 제한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제1항).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 위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찰봉, 가스분사용총, 전자충격기 등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장비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제2항).

강제퇴거·보호시설 보호 과정 등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례에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기간의 상한 없이 보호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원칙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강제퇴거대상자를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인치·수용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아 무기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호의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고,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독립된 중립적 기관의 통제절차와 당사자의 의견 및 자료 제출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보호 심사 및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보호명령서 발급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시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결정 및 「출입국관리법」(법률 제20794호) 개정이유 참조>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강제퇴거·송환 및 보호 과정에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외국인보호소 직원의 과도한 강제력 행사)**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보호복 상의 착용 지시에 불응한 피보호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미 위험 물건이 회수된 상태였음에도 진정인의 몸을 누른 채 발로 몸과 머리 부위를 차 늑골 다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강제력 행사의 목적 자체는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해당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력 행사의 한계를 위반하여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4. 4. 7. 의결, 14진정0061300>

- **(외국인보호소의 난민신청자 장기 보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본국 송환 시 강제징집 우려가 있어 난민신청을 하고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었음에도, 외국인보호소에 600일 이상 장기간 보호된 사안에서,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는 송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이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까지 계속 보호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했거나 난민인정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의 일시해제 등 구금 대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4. 8. 21. 의결, 23진정1042500>

- **(출국대기실 난민신청자에 대한 송환집행 절차 미흡)**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뒤 출국대기실에 머무르던 중, 항공사 직원이 송환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일부 몸싸움이 발생한 사안에서, 욕설 행위자가 출입국공무원이 아닌 항공사 직원으로 확인되어 진정 자체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이 출입국당국이 관리하는

출국대기실에서 발생했고, 송환집행 과정에서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출국대기실 송환집행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해 불복의사를 명확히 밝힌 당사자에 대해서는 불복절차 가능 기간 동안 송환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4. 6. 28. 의결, 23진정0946600>

- **(보호실 내 일률적인 CCTV 모니터링)** 외국인보호시설이 보호실 입구에 설치한 CCTV를 통해 피보호자의 보호실 안 생활을 상시 모니터링한 사안에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은 인정되더라도 CCTV를 통한 감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별도의 탈의실이 없는 보호실에서 잠을 자거나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 전반이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CCTV 모니터링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 11. 02. 의결, 19진정0943400>

※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

Q. 임금체불과 근로자 폭행 문제로 사장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현재 불법체류 상태라서 조사받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걸려 추방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걱정하지 말고 신고해도 됩니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불법체류자 등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본문). 하지만, 해당 외국인이 폭행이나 임금체불과 같이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면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단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 참조).

2.3. 공권력 및 디지털 환경 속 인권침해

2.3.1.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법률에 대한 신체의 자유 보장

적법절차의 원칙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영장주의

▪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 본문 및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

긴급체포 및 증거의 요건

긴급체포 요건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 단서 및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 **Q. 경찰이 영장 없이 저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
> A. 아닙니다. 영장 없는 체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
>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다만, 긴급체포 여부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으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증거의 요건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그 밖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9조).

▪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주요 사례

영장주의·적법절차 등 위반 관련 인권침해 사례

▪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의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긴급체포 요건의 엄격한 판단)**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되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그 요건 충족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3. 3. 27. 자 2002모81 결정>

- **(압수·수색영장의 범위 제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객관적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 **(임의제출물 압수와 위법수집증거)**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 다툼이 있으면 피고인이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에 관하여 그 제출의 임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참여권 보장)**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해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변호인에게도 참여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도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 실현의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영장 없는 수색 등 수사절차에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영장 기재 장소 외 압수·수색)** 경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주거지가 아닌 다른 거주지를 수색하고 물건을 압수한 사안에서, 압수·수색은 영장에 수색할 장소 등이 명백히 특정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이 영장 신청 이후 실거주지를 파악했다면 영장을 재신청하거나 주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압수·수색한 것은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 7. 5. 의결, 18진정0168100>

- **(영장 없는 가택 수색의 임의성 미확보)** 경찰관이 택배물품 도난 신고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진정인의 집 안을 둘러보고 사진을 촬영한 사안에서, 대상자의 동의에 의한 가택 수색도 적법절차 원칙을 따라야 하며, 수사기관은 수색의 임의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수색조서 작성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색조서나 증명서가 작성되지 않아 수색의 임의성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이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0. 6. 22. 의결, 19진정0752000>

- **(압수수색영장 내용 확인 기회 미보장)**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가 충분히 읽기 전에 회수한 사안에서, 영장 제시는 단순히 영장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압수자가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압수 대상·방법의 제한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장의 일부만 확인하게 한 뒤 회수한 것은 적법한 영장 제시로 보기 어렵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 11. 29. 의결, 18진정0124600>

2.3.2.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인권침해

집회 및 시위 보장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21조 참조).

▪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합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결정).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및 제한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사유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집회 및 시위의 제한 사유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본문).

- 집회 및 시위의 금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또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의 기재 사항을 보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하지 않은 때
- 교통 소통을 위해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라고 인정될 때

※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제1항).

- 옥외집회 및 시위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신고장소”라 함)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집회의 금지와 해산

•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될 수 있고,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예컨대 시위참가자수의 제한, 시위대상과의 거리제한, 시위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입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결정).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인권침해 주요 사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 관련 사례

▪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사례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일률적·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야간 시위의 일률적 금지)** 야간 시위가 주간 시위보다 질서 유지가 어렵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야간 시위 금지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의 시위 주최·참가가 사실상 어려워져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박탈될 수 있으므로, 이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2012헌가13 (병합) 결정>

-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시위 전면 금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집회나 시위가 공관의 기능을 직접 침해하거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규모·평화적 집회 등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해칠 우려가 낮은 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장 공관 등 일정한 공관 100미터 이내의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가1 결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95호) 개정이유 참조>

- **(집회 현장에서의 직사살수행위)** 헌법재판소는 집회 현장에서의 직사살수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직사살수 당시 A씨는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을 뿐, A씨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직사살수행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씨의 머리와 가슴 윗부분을 향해 강한 물살세기로 직사살수를 계속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A씨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5헌마1149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고된 집회물품의 반입 차단)** 신고된 옥외집회 현장에 집회 참가자가 행정대집행으로 수거된 물품을 돌려받아 다시

반입하려 했으나, 경찰이 일체의 물품 반입을 허용하지 않은 사안에서, 반입하려던 물품 중에는 앰프, 스피커, 깃발 및 핸드마이크 등 적법한 시위용품으로 보이는 물품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반입을 불허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4. 2. 24. 의결, 13진정0269500>

- **(학교장의 허락 없는 집회·결사 참여 금지)** 중학교 학생생활규정에서 학교장의 허락 없이 어떠한 집회나 결사에도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허락 없이 불법 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학생에게도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집회나 서클의 성격과 관계없이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2. 11. 8. 의결, 22진정0392600>

- **(중복집회 조율 및 보호조치 미흡)**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려던 사람이 여러 차례 집회신고를 했으나, 같은 장소에 이미 선순위 집회신고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집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측 용역직원 등으로부터 방해를 받았음에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율하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경찰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 사이에서 평화적 개최가 가능하도록 조율하고, 후순위 집회 신고자의 집회·시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경찰의 조율 및 보호의무 미흡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 3. 28. 의결, 16진정0458200>

- **(저온 상황에서의 물포 사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한미FTA 비준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포를 사용한 사안에서, 물포가 집회참가자와 경찰 사이의 직접적인 충돌을 줄이는 장비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이므로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체감온도가 낮은 상황에서 물포를 사용할 경우 집회참가자들이 저체온증 등 생명·신체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추운 날씨를 고려하지 않은 물포 사용은 과도한 장비사용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2. 9. 18. 의결, 11진정0658500 등 병합>

※ 집회 및 시위의 방법,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집회·시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3. 디지털 인권침해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위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전단).

※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정보게재자”라 함)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후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전단).

※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후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전단).

※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후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함)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1항 후단).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위 2., 3. 및 5.부터 7.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제공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관련 인권침해 주요 사례

개인정보 이용, 유출 등 관련 인권침해 사례

▪ 대법원은 다음의 사례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 또는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이란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 <출처: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
> • 다만,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여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 <출처: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
> • 장례식장 CCTV 영상을 재생하여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안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 위치정보 등도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어 그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CCTV 영상을 보게 한 행위도 권한 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 <출처: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개인정보가 목적외 이용되거나 유출된 경우 초상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사 담당자들이 징계 혐의 사실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직원의 채용 등 내부 행정 목적으로만 수집된 사진(개인정보)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가져와 외부 탐문조사에 사용한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진을 피조사자를 알 만한 주변 상점 아르바이트생 등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며 탐문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초상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5. 4. 8. 의결, 23진정1068000>

• 교육청 직원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서류를 다른 위원들에게 공유하는 과정에서, 민원 제기자의 이름과 시민단체 직함 등 핵심 인적 사항을 마스킹(가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하여 전송한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 소홀로 인해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5. 2. 7. 의결, 24진정0175000>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Q. AI 면접관이 과거 합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성별이나 지역 출신을 탈락시킨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A.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자동화된 결정”이라 함)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해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제3항).

※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또는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인권침해 구제

3.1.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

3.1.1. 진정

진정접수

"진정"이란?

▪"진정"이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것 및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말합니다(「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절차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홈페이지(https://case.humanrights.go.kr)-진정-진정안내>

진정의 대상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 및 제30조제1항 참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

진정 방법

▪진정은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에 의한 것을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6조 참조).

※ 그 밖의 진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에 관한 규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Q. 교도소 등에서 징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는 중인 수용자도 인권위에 진정서를 낼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시설수용자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및 그 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또한,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기 위해 작성 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해서는 안 되며,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진정에 대한 조사

조사의 방법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방법으로 진정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

-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함)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3항).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해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해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해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2항).

※ 위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5항).

▪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4항).

심의 및 처리 방법

사건의 심의

▪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진정사건을 심의한 후 다음에 따라 처리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7조 참조).

1. 진정 각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

- 진정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해 다시 진정한 경우
-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2. 수사 의뢰: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제1항).

3. 진정 기각: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

-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합의 권고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권고하거나 직권으로 그 진정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참조).

5. 구제조치 권고: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함)에게 다음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 참조).

-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6. 고발 조치 및 징계 권고: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 조치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7. 법률구조 요청: 진정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1항).

8.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진정 각하 또는 기각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이견을 표명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 참조).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1항).

- 의료, 급식 및 의복 등의 제공
- 장소, 시설 및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2항).

※ 진정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1331 / https://case.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2. 조정

조정제도

“조정제도”란?

▪ “조정제도”란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e(https://case.humanrights.go.kr/)-민원·신고-조정-조정안내].

조정 대상

▪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1항).

조정의 신청

조정의 신청 및 당사자

▪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e(https://case.humanrights.go.kr/)-민원·신고-조정-조정안내].

▪ 여러 명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중 1명 또는 2명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3제1항·제2항).

▪ 조정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해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3제3항).

직권조정 거부

▪ 당사자가 직권조정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직권조정회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당사자 일방이 직권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통지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e(https://case.humanrights.go.kr/)-민원·신고-조정-조정안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 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소집하며,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이 적당하지 않고, 이 결정으로 조정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의2).

조정 결정 및 효력

조정기일

▪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이 없는 경우에 간사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기일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각하통지서를 발송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때에는 조정기일의 통지는 대표당사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3제4항).

조정의 성립

▪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2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3항).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4항).

-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소집하며, 조정회의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위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취지와 이 결정으로 조정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2항).

▪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조정의 효력

▪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과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

> ※ 조정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1331 / https://case.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3. 군인권침해 구제

군인권침해

"군인권침해"란?

▪ "군인권침해"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병영생활을 말함)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8호).

군인권보호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군인권보호위원회"라 함)를 둡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3제1항·제2항).

군인권침해의 조사

군부대 방문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함)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함)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제1항).

▪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이하 "군인권보호관등"이라 함)이 위에 따라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1조의2).

- 군부대 소속 직원 및 군인등의 진술 청취
- 군부대의 장 또는 그 소속 직원 및 군인등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 군인등의 인권상황 조사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
  - √ 녹음, 녹화 및 사진촬영
  - √ 군인등의 건강상태 조사
  - √ 물건·사람·장소나 그 밖의 상황에 대한 확인

군인등 진정권 보장 수단

▪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편·전화·인터넷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5).

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수사의 입회

▪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등에 사망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제1항).

▪ 국방부장관은 위에 따라 군인등의 사망사건을 인지하면 위원회등에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

- 사건의 개요
- 사망자의 소속·계급
- 발견 경위
- 발견 일시·장소

※ 위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확인된 사실만을 구두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

▪ 위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외함)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제2항 전단).

※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조사나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으면 그 입회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제2항 후단).

군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특례

진정 각하의 특례

▪ 위원회등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진정의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제1항 본문).

※ 다만,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제1항 단서).

▪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제외함)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제2항 본문).

※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와 관련된 진정으로서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치고,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제2항 단서).

▪ 위에 따른 조사는 진행 중인 수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제3항).

조사 방법의 특례

▪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제외함)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8제1항 전단).

※ 이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 수사가 종결된 이후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8제1항 후단).

피해자 보호조치

긴급구제 조치 요구

▪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구제 조치(「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9제1항).

긴급구제 조치 이행 및 결과 통보

▪ 국방부장관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등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9제2항).

▪ 국방부장관은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등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9제3항).

> ※ 군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진정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인권지키미 홈페이지(https://hrkeeper.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헌법재판소를 통한 구제

3.2.1.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헌법소원"이란?

▪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헌법재판소(https://www.ccourt.go.kr)-헌법재판 안내-헌법소원심판].

※ 헌법소원심판 절차 흐름도



<출처: 헌법재판소(https://www.ccourt.go.kr)-헌법재판 안내-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 위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

-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청구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본문).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단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제1항).

-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 침해된 권리
-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청구 이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제4항).

▪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제3항).

※ 다만, 심판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9조제1항 단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해당 소송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전단 및 제41조제1항 참조).

※ 이 경우 그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후단).

청구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2항).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제2항 및 제43조 참조).

-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1조제3항).

※ 다만, 심판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9조제1항 단서).

헌법소원심판 절차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1항).

각하 결정

▪ 지정재판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재판부 회부

▪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4항 전단).

▪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4항 후단).

헌법소원 결정의 효력

종국결정의 유형

▪ 헌법소원 종국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헌법재판소(https://www.ccourt.go.kr)-헌법재판 안내-헌법소원심판].

1.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각하 결정
2. 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기각 또는 합헌 결정
3.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인용 또는 위헌 결정
4. 심판절차 종료선언

인용결정의 효력

▪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1항).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해야 하며,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2항 및 제3항).

-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며,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4항).
-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5항).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7항, 제45조 본문 및 제47조제2항).

▹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8항).

> ※ 헌법소원심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https://www.c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배상 및 보상을 통한 피해구제

3.3.1. 국가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보장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9조제1항 전단).

국가배상 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인권침해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전단 참조).

▪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후단).

> ※ 위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3항).

외국인의 배상 제한

▪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국가배상법」 제7조).

배상기준

사망한 경우의 배상기준

▪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함)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5항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제5조).

1. 유족배상(遺族賠償):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

2. 장례비: 평균임금(임금통계를 남자 또는 여자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남자 평균임금으로 함)의 100일분

3. 위자료(「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4)

① 피해자 본인: 2천만원

②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③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④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신체에 해를 입은 경우의 배상기준

▪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5항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휴업배상(休業賠償):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

3. 장해배상(障害賠償):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

4. 위자료(「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

구 분	내 용
신체의 장해가 있는 경우	① 피해자 본인 • 노동력 100% 상실: 2천만원 • 그 외: 2천만원 × 노동력 상실률 ②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③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④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신체의 장해가 없는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간에 대해 1일에 2만원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의 배상기준

▪ 타인의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제3항).

1.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1.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그 밖에 경우의 배상기준

▪ 명예를 침해당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의 고통을 받은 사람은 사망 또는 상해의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6의2).

배상방법

배상 신청

▪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 ※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 -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 -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제3항).

심의 및 결정

▪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證人訊問)·감정(鑑定)·검증(檢證)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3조제1항).

▪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再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15조의2제1항).

배상금의 지급 청구

▪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5조제1항).

3.3.2. 형사보상 청구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보장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형사보상의 요건

▪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상소권회복에 따른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따라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따른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이 경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일수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일수로 봄)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裁量)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

-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競合犯)의 일부에 대해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해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 **※ 피의자보상**
>
> **Q. 억울하게 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 A. 네, 바로 “피의자보상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 즉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 이 경우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告知)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단서 및 「형사소송법」 제247조).
>
> ·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 ·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
> · 검사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보상기준

구금 또는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의 집행에 대한 보상기준

▪ 구금 또는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5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법원은 위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기준

▪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하며,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기준

▪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연 5%의 이율(「민법」 제379조)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몰수(沒收) 집행에 대한 보상기준

▪ 몰수(沒收)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時價)를 보상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추징금(追徵金)에 대한 보상기준

▪ 추징금(追徵金)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액수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

형사보상 청구 절차

보상청구권자

▪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3조).

청구 방법 및 기간

▪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해야 하며,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 보상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 보상청구서(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야 함)
- 무죄재판서의 등본
-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 유무를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취소 및 중단·승계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사람은 나머지 모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형사보상 청구를 취소한 경우에 보상청구권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다른 청구인이 없을 때에는 형사보상 청구의 절차는 중단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위의 경우 보상을 청구한 사람의 상속인 또는 보상을 청구한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2개월 이내에 청구의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

▪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하며,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항).

▪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제2항 및 제4항).

- 보상청구의 절차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을 경우
-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 보상청구의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했을 경우
- 보상을 청구한 자가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보상청구 절차가 중단되고 2개월 이내에 보상청구 절차를 승계하는 신청이 없을 경우

불복신청

▪ 보상결정 또는 청구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형사소송법」 제405조 참조).

보상금 지급 청구

▪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① 보상금지급청구서와 ②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참조).

▪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해 그 전부에 대해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명예회복)**

Q.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변이나 인터넷에 퍼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무죄재판서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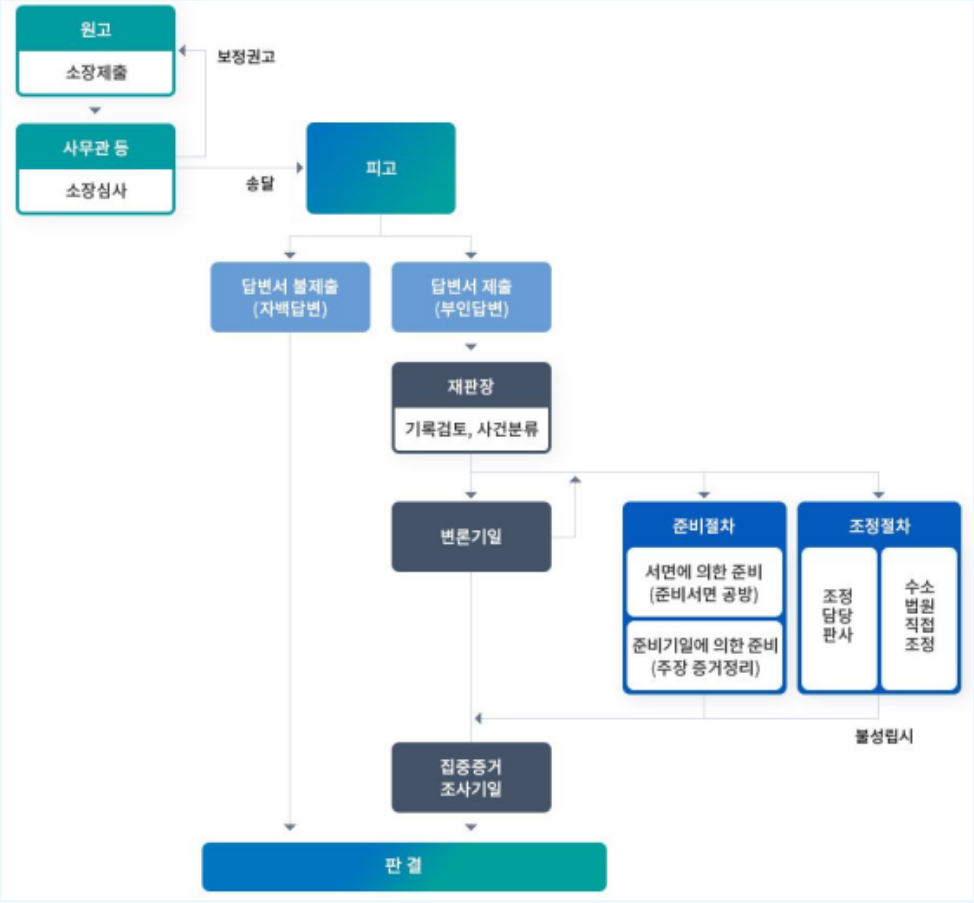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재판사건"이라 함)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함)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무죄재판서는 1년 동안 게재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3.3.3. 민사상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 민사소송 절차 흐름도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민사소송의 개요>

민사소송

▪ 개인,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인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결과로 재산적 가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및 제741조 참조).

▪ 인권침해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참조).

소장 제출

▪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제3항).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및 제256조제1항 본문).

변론준비

▪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 준비서면 및 증거제출과 증인신청, 검증·감정신청을 하는 등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1조부터 제284조까지).

변론준비기일

▪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 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참조).

변론기일 및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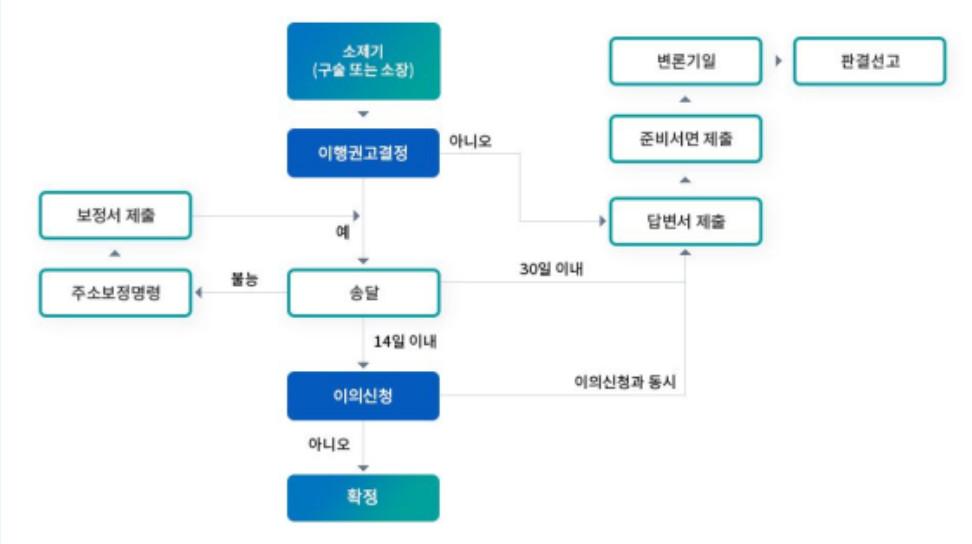
▪ 제1차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및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訊問)하고, 신문을 마치면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

▪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민사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을 통한 구제

※ 소액사건심판 진행 절차 흐름도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일반소송 외 절차-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

▪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복잡한 민사소송 대신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및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 소의 변경으로 위의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위의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소의 제기

▪ 소액사건의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구술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1항).

이행권고결정

▪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①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단서).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또는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4항).
-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제1항).

▪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본문)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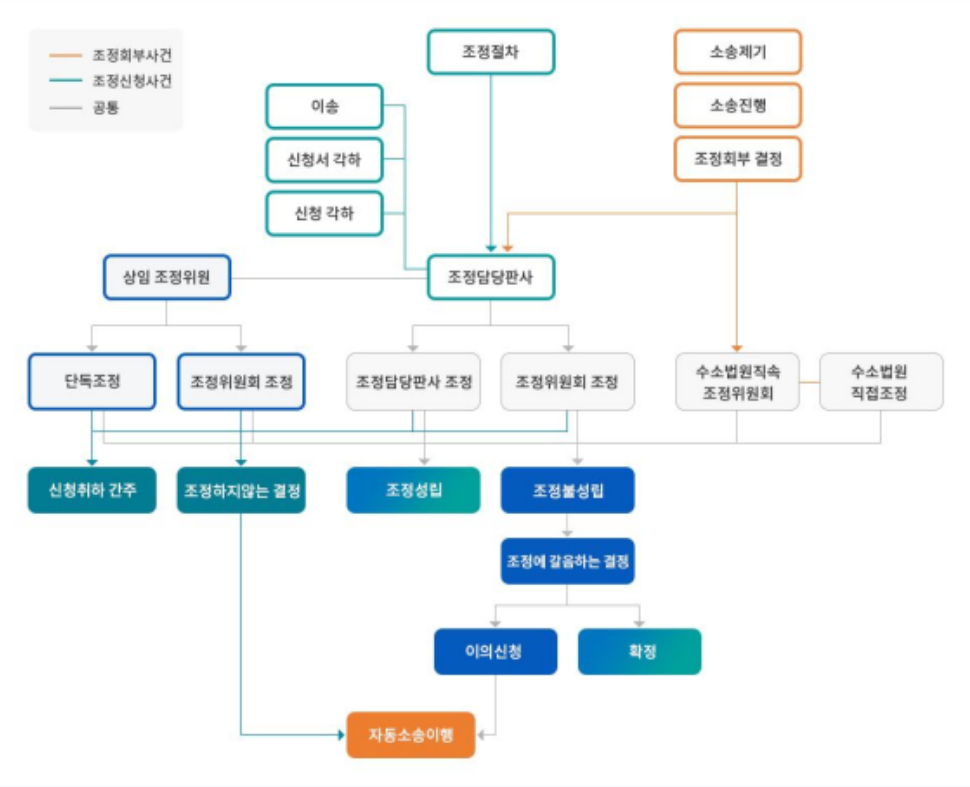
판결 선고

▪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본문 참조).

> ※ 소액사건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액사건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 민사조정절차 흐름도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일반소송외 절차-민사조정철차>

민사조정

▪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제도와 같이 법원의 판결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민사조정의 신청

▪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 조정의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조정의 성립

▪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2조).

-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의 효력

▪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

- 당사자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 민사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